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94

제 안 일 자 : 2021년 12월 20일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현행 일시적인 자문 또는 협의 기구를 위원회로 대체하려는 개정안 제4조 및 제4조의2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역할을 고려할 때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, 그 외에 신설조항의 조번호를 조정하고, 의미 구체화 또는 명확화를 위해 일부 용어 수정 등의 조치가 필요함.

2. 주요골자

가. 현행 자문 또는 협의 기구를 유지함(안 제4조 및 제4조의2).

나. ‘지역건설노동자’를 ‘지역건설산업종사자’로 수정(안 제9조의2).

다. ‘해마다 1번’을 ‘연 1회’로, ‘건설산업자’를 ‘지역건설사업자’로 수정하고 조번호를 ‘제9조의3’에서 ‘제4조의2’로 변경(안 제9조의3)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현행과 같이 한다.

안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의2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
2.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일시와 사유,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 누리집(홈페이지) 등에 공개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안 제9조의2의 제목 “(지역건설노동자 안전·보건 및 재해예방)”을 “(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·보건 및 재해예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지역건설노동자”를 “지역건설산업종사자”로 한다.

안 제9조의3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 (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) ①·② (생 략)	제4조 (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제4조 (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
③ 시장은 제2항의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문 또는 협의 기구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	<삭 제>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른 자문 또는 협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	<삭 제>	④ (현행과 같음)
⑤·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	⑤·⑥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제4조의2(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) ①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1.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. 지역건설산업자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3.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	제4조의2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1.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.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일시와 사유,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 누리집(홈페이지) 등에 공개할 수 있다.

	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시의 안전총괄실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1. 건설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기술직렬 시 공무원 2.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3.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. 그 밖에 건설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해산한다.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이 조례의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한다.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	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	정한다.	
제5조 (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) ①·② (생략)	제5조 (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제5조 (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③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자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	③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제9조의2(**지역건설노동자 안전·보건 및 재해예방**) 시장은 **지역건설노동자**의 안전·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1. 안전·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·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2.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·보존 3.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	제9조의2(**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·보건 및 재해예방**) ------ **지역건설산업종사자**----------. 1. ---------- 2. ---------- 3. ----------
<신 설>	**제9조의3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1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** **1.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** **2.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** **3.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** **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**	<삭 제>

	기 7일 전까지 일시와 사유,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건설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 누리집(홈페이지) 등에 공개할 수 있다.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
2.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일시와 사유,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 누리집(홈페이지) 등에 공개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자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·보건 및 재해예방)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종사자의 안전·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안전·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·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
2.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·보존
3.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) (생 략)	제4조 (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)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4조의2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1.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.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일시와 사유,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 누리집(홈페이지) 등에 공개할 수 있다.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제5조 (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) ①·② (생 략)	제5조 (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	③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자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제9조 (고용개선 지원) (생 략)	제9조 (고용개선 지원)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9조의2(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·보건 및 재해예방)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종사자의 안전·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1. 안전·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·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2.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·보존 3.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